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7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이병진・임미애・송옥주

윤후덕 • 권칠승 • 한민수

이상식 • 복기왕 • 이성윤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 여성가족부의 '2022년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'에 따르면,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·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'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'한 경우가 2020년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.3%에서 2021년 60.8%로 크게 증가함. 또한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의 8.1%에서 2021년 15.7%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.

일반적으로 아동·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다 강하 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,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반하여, 아동·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.

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,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.

이에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·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 -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의2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의용한 협박·강요)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.